

수신 서울시 관내 특수판매업자(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 등)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및 협조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연장 결정에 따라 서울시는 관내 특수판매업체(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 등)에 대해 내린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한) 집합제한 명령을 2021. 2. 14(일)까지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불임과 같이 방역지침을 안내하오니 판매업자는 주요 내용을 숙지하여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 현장점검반(시민자율감시단 등)이 방역수칙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방문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 요 내 용 >

-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적용시설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 등)
- 적용기간 : 2021. 2. 1.(월) 0시 ~ 2021. 2.14.(일) 24시
- 내 용 :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붙임. 1. 방문판매등 직접판매홍보관 방역지침 1부.
2. 관련 법률 1부. 끝.

서울특별시



주무관 **이택선** 인생대책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02/01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164 (2021. 2. 1.) 접수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공정경제담당관 /
(서소문동)

전화 2133-5367 /전송 02-768-8852 / dlxortjs32@seoul.go.kr / 대시민공개

특수판매업 방역수칙 안내문

이용인원 제한 안내

정부의 수도권 증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조정에 따라 이용인원을 아래와 같이 제한합니다.

- 업체명 :
- 시설면적 : m^2
- 이용인원 : **명(16 m^2 당 1명)**

○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16 m^2 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방역관리자 지정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 출입구 및 시설 내 여러 곳에 손소독제 비치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 공연, 노래부르기, 음식제공 등 금지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